

학생자치회 회칙



설월여자고등학교

설월여자고등학교 학생자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설월여자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특별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 기구) 본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6조 (기능)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지되 학칙과 본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3.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4. 각종 봉사 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6. 학교의 건전한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
7.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제7조 (효력 정지) 본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중지된다.

제 2 장 운 영 위 원 회

제8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9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생회 집행 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자치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 부의 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대의원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 및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하고,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학년)
2. 부회장 1인(1학년)
3.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 (부장은 2학년, 차장은 1학년)

제12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부서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4.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부서)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총 무 부 : 본 회의 사업 기획, 예산·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2. 학 예 부 : 학술·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3. 체 육 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4. 바른생활부 : 교내의 질서, 교풍 확립, 회원의 수련에 관한 사항
5. 봉 사 부 : 각종 봉사 활동, 새마을 운동에 관한 사항
6. 환 경 부 : 교내 미화·청결에 관한 사항
7. 정 보 부 : 네티즌으로서 올바른 정보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8. 학생복지부 : 학생들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9. 도 서 부 : 교내 및 교외 학생들의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사항
10. 과 학 부 : 교내 및 교외 종합적인 과학 활동을 담당
11. 홍 보 부 : 교내 및 대외 학교의 홍보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
12. 문 화 부 : 교내 및 교외의 학생 문화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
13. 서 기 : 학생자치회 회의록 작성 및 회의장 관리

제14조 (임원 선출 및 자격)

1. 학생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설월여자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은 학생자치회 운영위원 선출위원회에서 자기 추천서와 면접을 통해 최종 1인을 추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3. 학생자치회 운영위원 선출위원회는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당선자와 1, 2학년 대의원 각 2명, 지도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선출위원회 대의원은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한다.
4. 임원의 자격은 다음 항목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으로 한다.
 - 교칙 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사회봉사 3일 이상의 처벌 중에 있는 학생
 - 교칙 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사회봉사 3일 이상의 처벌을 받고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제15조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그 직책

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학생자치회 회장 선출은 8월중으로 하고, 선출된 후 14일 이내에 각 부서 부장, 차장을 임명한다.

제16조 (회의) 운영 위원은 회장단이나 학생자치회 지도 위원 또는 운영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불가피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대위원회를 동시에 소집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 (의사 결정)

1. 운영 위원의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된 안건은 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 위원의 지도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 3 장 대 의 원 회

제18조 (구성)

1. 대위원회는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자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2. 각 학급자치회의 회장은 담임 교사의 지도하에 학급 내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3. 학급자치회 회장의 임기는 학기 단위로 한다.

제19조 (기능) 대의원 회의는 학생회 상설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생회 사업 계획 심의 및 결산 보고의 승인
2. 학생회 예산, 결산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 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토의에 관한 사항

제20조 (회의) 대의원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1. 정기회는 매 학기 초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학생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3.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 전에 지도위원회 간사의 지도를 받아 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대의원 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제개정은 재적 의원 2/3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지 도 위 원 회

제21조 (구성) 학생자치회 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담당 교사로 한다.
2. 각 부서에 지도위원으로 1인 이상을 임명하여야 한다.(단, 1인의 지도위원이 2개 이상의 부서를 지도할 수 있다.)
 - 총 무 부 : 생활안전부장
 - 학 예 부 : 문화인성부장
 - 체 육 부 : 체육복지부장
 - 바른생활부 : 생활안전부장
 - 봉 사 부 : 진로진학부장
 - 환 경 부 : 환경보건부장
 - 정 보 부 : 교육정보부장
 - 학생복지부 : 환경보건부장
 - 도 서 부 : 문화인성부장
 - 과 학 부 : 과학교과부장

- 홍 보 부 : 교무기획부장
- 문 화 부 : 문화인성부장

제22조 (기능)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자치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생자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학생자치회 회장 선거 일자에 관한 사항
9. 학생자치회 회장 선출 규정에 관한 유권 해석

제 5 장 재 정

제23조 (회비) 본 회의 경비는 학생자치회비로 충당하며, 본 회의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1. 회비의 수납 및 지출 등에 관한 사무 처리는 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지출 할 때에는 지도 위원의 지도를 받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2. 학생자치회 활동을 돕는 제반 지도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회계 연도) 학생자치회의 회계 연도는 학교 회계 연도와 같다.

제25조 (예산 편성) 학생자치회 예산 편성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자치회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지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 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통과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학생회장은 지도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3. 예산 편성 성립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결정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사의 지도를 받아 생활안전부장, 교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단, 행정실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결산) 학생회장은 회계 연도 만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8학년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 회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 (부칙):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규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2학년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 회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 (부칙):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규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3학년도 7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 회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 (부칙):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규정.

설월여자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생자치회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으며, 그 임기는 매해 9월 1일부터 익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1. 회 장 : 1인(2학년)
2. 부회장 : 1인(1학년)
3. 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분리하여 선출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 ② 선관위는 선거일공고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구성에 있어 학생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을 비롯한 학생자치회 운영위원은 제외하며 이들은 선거에 있어 엄정 중립의 의무를 져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그 권리(선거권 및 피선거권)와 자격을 모두 박탈한다.
- ③ 선관위 위원은 학생자치회 대의원 중 10명을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의에서 추천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추천에 있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의원 중 1학년 5명, 2학년 5명으로 한다.
- ④ 선관위는 위원장(2학년)과 부위원장(1학년)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 후 선거관리위원 명단을 선거일공고일에 공고(붙임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⑦ 선관위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표자명단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관리, 투표 및 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공명선거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심의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에 필요한 일

제4조 (선거일공고) 선거일은 교직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1주일 전까지 공고(붙임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5조 (선거권자)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교 1, 2학년 학생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다만, 선거일 현재 교칙 위반 학교폭력 포함)으로 사회봉사 3일 이상의 처벌 중에 있는 학생은 선거권이 없다.

제 6조 (입후보자격)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 7조 (입후보자격의 제한) 선거일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후보 할 수 없다.

1. 교칙 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사회봉사 3일 이상의 처벌 중에 있는 학생

2. 교칙 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사회봉사 3일 이상의 처벌을 받고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제 8조 (투표자명단의 작성) 학교장은 선거일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붙임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9조 (후보자 등록)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공고 후 3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붙임 제4호 서식) 1부
2. 입후보자 서약서(붙임 제5호 서식) 1부
3. 담임추천서(붙임 제6호 서식) 1부
4. 추천장(붙임 제7호 서식) 1부
5. 학생자치회 운영위원 사퇴서(붙임 제8호 서식) 1부

② 제1항 제3호의 추천장은 선거권자 2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선관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등록상황을 공고(붙임 제9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무효 및 사퇴) ①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및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붙임 제10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학년별로 3명이내의 선거

운동 도우미를 둘 수 있으며, 선거도우미 이외의 학생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선관위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의 직권으로 후보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경우에는 그 명단(붙임 제11호 서식)을 선관위에 등록당일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그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

④ 선관위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학부모 등 누구든지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할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개입 등 과열 양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결정으로 선거자체를 취소하고 학생회 지도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최종결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행위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행위
3.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⑤ 선관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선거홍보 포스터)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로 38cm, 세로 53cm 이내)를 작성하여 8매를 후보자등록마감후 지정 기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포스터 8매는 모두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포스터를 각 층간 계단의 게시판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13조 (소견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회와 개인소견발표회를 통

하여 자신의 소견·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와 찬조 연설자(1인)는 합동소견발표 1일 전에 선관위에 원고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소견발표기회를 박탈한다. 또한, 소견발표내용이 선관위에 제출한 원고내용과 다를 경우에도 기회를 박탈한다.
- ④ 합동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⑤ 후보자와 찬조연설자의 소견발표 시에 홍보용 동영상 등 연설 이외의 수단은 사용할 수 없다.
-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수업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4조 (어깨띠·피켓 등)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공약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5조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선거권자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투 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나, 기타 사정에 의해 투표 용지에 의한 투표가 어려운 경우 지도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온라인으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투표용지(붙임 제12호 서식)는 선거별로 선관위가 선거일 1일전까지 작성한다.
- ③ 선관위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투표사무는 선관위가 담당한다. 다만, 투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도우미를 학생회 운영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⑤ 후보자는 투표참관인 2명씩 선정하여 그 명단(붙임 제13호 서식)을 선거일 1일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관위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선관위 회의를 거쳐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 ⑥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 ⑦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결과통계표(붙임 제14호 서식)를 작성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함께 개표장으로 옮겨야 한다.

제17조 (개 표) ① 선관위는 개표소를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표사무는 선관위가 담당한다. 다만, 개표소에서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학생회 운영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붙임 제15호 서식)을 선거 1일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선관위 회의를 거쳐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 ④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선관위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한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⑥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학교장에게 사실을 알리고 즉시 개표결과통계표(붙임 제14호 서식)를 발표하고 선거록(붙임 제16호 서식)을 작성한다.

- 제18조 (당선인 결정)** ① 선관위는 개표결과 입후보자중 최다득표자를 회장과 부회장의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등록 마감 후 회장과 부회장 후보자가 1개 팀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생회대의원회의 재적대의원 2/3가 출석한 회의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④ 선관위는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그 명단을 공고(붙임 제17호 서식) 하여야 한다.

- 제19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에 미달하는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3.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인 무효로 된 때
-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제20조 (보궐선거)** ① 학생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학년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제21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당선인 결정 후 10일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내에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22조 (당선무효)** 선거운동기간 중에 당선인이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제23조 (보칙)** ① 선관위는 투표결과통계표, 선거록 및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담당교사에게 인계하고, 담당교사는 이를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③ 이 규정은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개정할 수 있다.